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13
----------	------

발의연월일 : 2025. 4. 15.

발의자 : 정춘생 · 황운하 · 신장식  
이해민 · 차규근 · 김선민  
서왕진 · 박은정 · 강경숙  
김재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각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지장물의 취득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철거예정 지장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으로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함.

이에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

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철거예정인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호에서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85조의2제1항제4호 · 제5호”를 “제85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제6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u> <u>12월 31일</u>(제4호의 경우에는 2 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를 감면한다.</p> <p>1. ~ 5. (생 략) <u>&lt;신 설&gt;</u></p>	<p>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u>2028년</u> <u>12월 31일</u> ----- ----- -----.</p> <p>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 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 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철거예 정인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 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p>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용 철거예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 한다.

② . ③ (생 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